

아동복지법 제 25조(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)

-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(제 12호)「영유아보육법」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아동복지법 제 75조(과태료)

- ②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